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2. 13 선고 2021가단8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희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정연구

변론 종결2022. 11. 1.

판결 선고2022. 12. 13.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12. 2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0. 12. 22. 접수 제1770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337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777,659원 및 그중 274,872,574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20. 12. 22.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0. 12. 22. 접수 제177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한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에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20. 5. 14. 채권최고액을 7,200만원, 근저당권자를 D조합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2022. 6. 22. 기준 그 피담보채권액은 6,800만 원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 9. 24. 기준 시가 합계액은 83,826,000원 내지 117,356,400원정도이다.

③ B은 2018. 1. 8.경부터 피고로부터 벼의 도정 및 판매를 위탁받아 벼를 도정□위탁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B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2019. 11. 30. 기준 24,902,000원, 2020. 6. 26. 기준 23,124,000원이었다. 즉, B은 피고에게 기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조인

별지